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정 보 공 개 서

(주)코코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1010001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1.02.1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68, A 동 612 호 (주)코코엘

가맹사업부 Tel : 02-747-3523 Fax : 02-2252-3522

lenstown@pielinter.com www.lenstown.co.kr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I. 당사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2013.02.28 | 2013.03.15 | (주)코코엘<br>사업자등록번호 106-86-92419<br>법인등록번호 110111-5078674 |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김선규  | (주)코코엘 | 렌즈타운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 612호 |              |              |
| 김윤선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대표) |        |      | 김선규, 김윤선                     | 02-2252-3523 | 02-2252-3522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브랜드 | 인수·합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해당사항없음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렌즈타운      | -                          |
| 상 호 | 렌즈타운 OO 점 |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                                                                                 |
|----------|-----------------------------------------------------------------------------------|---------------------------------------------------------------------------------|
| 상표(서비스표) | 렌즈타운                                                                              | 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130044508<br>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업표지     |  | -                                                                               |
| 영업표지     |  | 서비스표 출원번호:<br>4020160108136(2016.12.5)<br>서비스표 출원공고:<br>4020170037389(2017.4.7) |

#####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 1) 연도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 연도    |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매출액       | 영업 이익    | 당기 순이익   |
|-------|-----------|-----------|-----------|-----------|----------|----------|
| 2021년 | 4,008,388 | 2,413,419 | 1,594,968 | 5,788,716 | -493,459 | -351,707 |
| 2022년 | 6,415,350 | 2,460,728 | 3,954,621 | 4,612,139 | -95,098  | 449      |
| 2023년 | 5,708,599 | 2,031,319 | 3,677,279 | 4,611,214 | -349,825 | -277,341 |

######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3 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 김선규 | 대표   | 2013.03~현재 | (주)코코엘 대표 | 회사 업무 총괄 |

|               |     |    |            |           |          |
|---------------|-----|----|------------|-----------|----------|
| 관련 임원         |     |    |            |           |          |
| 가맹사업<br>관련 임원 | 김윤선 | 대표 | 2023-06~현재 | (주)코코엘 대표 | 회사 업무 총괄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2      | 0   | 14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없음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출원일<br>등록일                               | 출원번호<br>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존속기간<br>만료일<br>(가맹본부의<br>사용기간) |
|-------------------------------------------------------------------------------------|------------------|------------------------------------------|-----------------------------------------------------------|----------------|--------------------------------|
|  | 가맹점<br>상호로<br>사용 | 출원일<br>2014.03.14.<br>등록일<br>2015.01.13. | 출원번호<br>제 40-2014-<br>0017145 호<br>등록번호<br>제 40-1081319 호 | (주)코코엘         | 2025.01.13                     |
|  | 가맹점<br>상호로<br>사용 | 출원일<br>2016.12.5.<br>등록일<br>2017. 7. 11. | 출원번호<br>제 40-<br>20160108136 호<br>등록번호<br>제 40-1268242 호  | (주)코코엘         | 2027.7.11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출원신청만 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II. 가맹본부의 [렌즈타운] 가맹사업 현황

###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2011 년 02 월 26 일

###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렌즈타운        | 렌즈타운 | 이재춘        | 2011.02.26~2013.07.12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361-7                               |
| (주)피엘 인터네셔널 | 렌즈타운 | 김선규        | 2013.07.12~2013.08.05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84 길 12(원효로 1 가, 13, 14201 호)       |
| (주)피엘 인터네셔널 | 렌즈타운 | 김선규        | 2013.08.05~2019.01.08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95 길 40(잠원동, 광운빌딩 4 층)             |
| (주)코코엘      | 렌즈타운 | 김선규        | 2019.01.09~2022.05.31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8 7 층, 8 층(역삼동, 휴먼빌딩)             |
| (주)코코엘      | 렌즈타운 | 김선규<br>김윤선 | 2022.06.01~현재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68, A 동 612 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

### 3. 렌즈타운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렌즈타운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안경  | 안경, 콘택트렌즈 |

### 4. 바로 전 3 년간 사업연도 말 [렌즈타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2012 년 이전 자료는 당사가 [렌즈타운]을 인수하기 전 “렌즈타운”에서 운영하던 당시의 자료입니다.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 전체 | 73         | 67  | -   | 71         | 71  | -   | 67         | 67  | -   |
| 서울 | 18         | 18  | -   | 19         | 19  | -   | 18         | 18  | -   |
| 인천 | 2          | 2   | -   | 3          | 3   | -   | 2          | 2   | -   |
| 경기 | 15         | 15  | -   | 15         | 15  | -   | 15         | 15  | -   |
| 부산 | 4          | 4   | -   | 4          | 4   | -   | 4          | 4   | -   |

|    |   |   |   |   |   |   |   |   |   |
|----|---|---|---|---|---|---|---|---|---|
| 대구 | 1 | 1 | - | 1 | 1 | - | 1 | 1 | - |
| 광주 | 4 | 4 | - | 4 | 4 | - | 4 | 4 | - |
| 대전 | 2 | 2 | - | 2 | 2 | - | 2 | 2 | - |
| 울산 | 1 | 1 | - | 1 | 1 | - | 1 | 1 | - |
| 강원 | 4 | 4 | - | 4 | 4 | - | 4 | 4 | - |
| 충북 | 1 | 1 | - | 1 | 1 | - | 1 | 1 | - |
| 충남 | 3 | 3 | - | 3 | 3 | - | 3 | 3 | - |
| 전북 | 3 | 3 | - | 3 | 3 | - | 3 | 3 | - |
| 전남 | 2 | 2 | - | 3 | 3 | - | 2 | 2 | - |
| 경북 | 1 | 1 | - | 2 | 2 | - | 1 | 1 | - |
| 경남 | 4 | 4 | - | 4 | 4 | - | 4 | 4 | - |
| 제주 | 2 | 2 | - | 2 | 2 | - | 2 | 2 | - |

##### 5. 바로 전 3년간 [렌즈타운]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2012년 이전 자료는 당사가 [렌즈타운]을 인수하기 전 “렌즈타운”에서 운영하던 당시의 자료입니다.

| 연도   | 연초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증감 |
|------|----|------|------|------|------|----|----|
| 2021 | 80 | 3    | 10   | 0    | 0    | 73 | -7 |
| 2022 | 73 | 4    | 6    | 0    | 2    | 71 | -2 |
| 2023 | 71 | 2    | 6    | 0    | 4    | 67 | -4 |

##### 6. [렌즈타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POS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에는 콘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 세척액, 식염수 등 원부자재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물품 대금을 근거로 추정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                 |
|----|---------|-------------------------|-----------------|
| 지역 | 2023년 말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sup>⑤</sup> |
|----|---------|-------------------------|-----------------|

|    | 가맹점수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br>3.3m <sup>2</sup> 당 | 상한            | 면적<br>3.3m <sup>2</sup> 당 | 하한            | 면적<br>3.3m <sup>2</sup> 당 |       |
| 전체 | 67   | 199,156   | 25,766                    | 572,638       | 80,672                    | 33,377        | 4,789                     |       |
| 서울 | 18   | 288,186   | 38,770                    | 572,638       | 80,672                    | 33,377        | 4,789                     |       |
| 부산 | 4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대구 | 1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인천 | 2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광주 | 4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대전 | 2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울산 | 1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세종 | 0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경기 | 15   | 194,790   | 25,241                    | 472,147       | 67,743                    | 62,633        | 8,986                     |       |
| 강원 | 4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충북 | 1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충남 | 3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전북 | 3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전남 | 2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경북 | 1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경남 | 4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제주 | 2    | 해당없음      |                           |               |                           |               |                           | 5 곳미만 |

\* 물품대금으로 제품 평균 마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 8. [렌즈타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렌즈타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67         | 2,228 일(6년 1월) |

## 9. 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
|----|----|----|----|

|     |         |      |         |
|-----|---------|------|---------|
| 광고비 | 562,578 | 메타 외 | 재무재표 기준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지점   | 주소                       | 전화번호                         |
|---------|--------|--------------------------|------------------------------|
| 우리은행    | U뱅킹사업단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br>203번지 | 080-365-5000<br>02-2002-5036 |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 목                | 내 용                                                                                                                                                                                                     |
|--------------------|---------------------------------------------------------------------------------------------------------------------------------------------------------------------------------------------------------|
| 필요서류<br>(은행양식)     | -가맹금예치신청서 1부                                                                                                                                                                                            |
| 징구서류               | 우리은행 계좌가 우리은행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br>- 가맹점사업자의 타행계좌 사본 1부<br>- 가맹점사업자 신분증 사본 1부<br>-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1부                                                                                                            |
| 이용방법<br>(다음 중 택 1) | <b>방법1</b><br>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 가맹금예치신청서 접수 → 은행 영업점에서 가맹금입금용 에스크로계좌 수취 → 에스크로계좌에 가맹금 입금<br><b>방법2</b><br>가맹본부가 우리에스크로 홈페이지에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등록 → 가맹점사업자의 휴대폰으로 가맹금입금용 에스크로계좌 문자로 발송 → 휴대폰 문자로 받은 에스크로계좌에 가맹금 입금 |

\* 우리은행 계좌가 없어도 예치가맹금의 예치가 가능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기업은행과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렌즈타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본사지원금은 계약시 특약사항)

| 구분               | 금액<br>(VAT 포함) | 지급<br>기한 | 비고              |
|------------------|----------------|----------|-----------------|
| 가맹비              | 550 만원         | 계약 체결일   | -브랜드 가입비        |
| 점포실사비            | 33 만원          |          | -가맹점포에 대한 실사비용  |
| 노하우 영업비밀<br>전수비용 | 220 만원         |          |                 |
| 교육비              | 220 만원         |          | -개점 전 판매/서비스 교육 |
| 프로그램비            | 550 만원         |          | -라이선스비          |

\*반환조건: 가맹사업법 제 10 조의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반환 안됨

### 2) 보증금액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금액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보증금 | 3000 만원<br>(VAT없음) |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5배 이내 |

###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 포함)

| 구분               | 금액(VAT포함)    |              |
|------------------|--------------|--------------|
|                  | 신규 가입자       | 기존 가맹점 양수자   |
| 합계               | 4,573        | 3,990        |
| 가맹비              | 550          |              |
| 점포실사비            | 33           |              |
| 노하우 영업비밀<br>전수비용 | 220          | 220          |
| 교육비              | 220          | 220만원        |
| 보증금              | 3000 (VAT없음) | 3000 (VAT없음) |
| 프로그램비            | 550          | 55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br>33㎡기준(약<br>10 평) | 평당<br>면적<br>비용 | 반환조건 및<br>반환될 수 없는<br>사유                                 | 비고                                 |
|------|--------------------|------------------------|----------------|----------------------------------------------------------|------------------------------------|
| 총계   | -                  | 8,170                  |                | -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br>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
| 인테리어 | (비공개)              | 4,000                  | 4,00           | 당사의<br>귀책사유가 없는<br>한 시공 및 공급<br>이후에는 반환될<br>수 없음         |                                    |
| 간판   |                    | 450                    | 45             |                                                          | 4m 기준-                             |
| 필수설비 | 가맹본부               | 1,870                  | 187            |                                                          | -                                  |
| 초도물품 |                    | 1,850                  |                |                                                          | 본사 PB                              |
| 별도금액 | 자체 조달<br>및<br>가맹본부 |                        |                | 철거, 화장실,<br>냉난방기,<br>소방설비, 외장,<br>전기증설,<br>전화기, 컴퓨터<br>등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br>변동될 수 있는 금액     |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 시 3.3㎡당

(55만원, VAT포함)의 감리비가 청구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비고                                                                     |
|-------|--------------------------------------------------------------------------------------------|------------------------------------------------------------------------|
| 가맹희망자 | <b>점포 미보유 시</b>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당사는 귀하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
|       | <b>점포 보유 시</b> : 최소 점포 기준 <b>33 m<sup>2</sup> 이상</b><br>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약 기준                | 교육·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안경사 면허 소지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종업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VAT포함)        | 지급기한 및 방법 |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광고/판촉비 | 가맹본부 | 자세한 내용은 (V-8-1)을 |           | 광고 실시 이후에는         |

|                    |      |                               |                                |                                         |
|--------------------|------|-------------------------------|--------------------------------|-----------------------------------------|
|                    |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반환되지 않음                                 |
| 모바일 상품권<br>수수료 분담금 |      | 전체 수수료의 100%                  |                                |                                         |
| 점포환경<br>개선비용       | 가맹본부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br>제외한 나머지         | Ⅶ-1. 점포환경개선 시<br>비용지원 내역 참조    |                                         |
| 개점 후 교육비           | 가맹본부 | 자세한 내용은 (Ⅷ-1)을<br>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이후에는<br>반환되지 않음          |                                         |
| 로열티                | 가맹본부 | 월 55만원                        | 매월 말일<br>당사에 지급                |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br>가맹점 관리비용으로<br>반환되지 않음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20%                          | 지급기일의<br>다음날부터<br>지급하는 날<br>까지 |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br>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br>을 시 부담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BI·CI 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와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에 의해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영업양수인은 반드시 당사와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이후 당사에 가맹사업자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양수인은 최초가맹금 중 가입비 및 점포설사비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교육비, 노하우, 영업비밀 전수 비용, 프로그램 라이선스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의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렌즈타운”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상품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 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가맹점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렌즈타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sup>①</sup>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렌즈타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렌즈타운]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 3. 상품,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개점 전 당사가 지정한 상품만 판매해야 합니다. 지정된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된 상품 외 다른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당사가 귀하에게 개점 전 지정한 상품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 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상품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취급하는 상품의 제한   | 위반 시 책임             |
|---------------|---------------------|
| V-3-3)의 상품명 외 |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의 판매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상품 및 기타 물품을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렌즈타운]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명 | 권장가격(원)       | 가격통보 방법                                                |
|-----|---------------|--------------------------------------------------------|
| 렌즈  | 5,000~100,000 | 월별 홈페이지 공지<br>또는<br>당사의 교육직원이<br>귀하의 점포에 방문하여<br>별도 공지 |
| 케이스 | 1,000~10,000  |                                                        |
| 세척액 | 1,000~15,000  |                                                        |
| 습윤제 | 2,000         |                                                        |
| 식염수 | 500~1,000     |                                                        |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렌즈 판매점    | 렌즈타운        | -    |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 설정방법          |
|-------------|---------------------------|---------------|
| 특수상권일 경우    | 특수상권 내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반경 150M<br>(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렌즈타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100%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100%         | -           |

## 6.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렌즈타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                                                                                                                                                |
|------------------------------------------------------------------------------------------------------------------------------------------------|
| ① 본 계약상의 가맹금 등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③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④ “렌즈타운(LENS TOWN)”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 및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PB상품 등을 진열 및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가 상품 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 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⑥ 가맹점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가맹본부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
| ⑦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5-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
|---------------------------------------------------------|
| 1. 가맹점사업자가 6 개월에 걸쳐 2 회 이상 상품 등에 관한 대금 지급 의무 등을 지체하는 경우 |
|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제17조(계속가맹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총 매출액 또는 재고를 1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운영매뉴얼 및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중단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비 또는 판촉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채무 미변제를 비롯한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0.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미수금이 100만 원(₩ 1,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11. 가맹본부와의 별도 서면 합의 없이,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본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본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직접 상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14. 기타 본 계약상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절차                                                                                                                                |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 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 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이나 전 전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렌즈타운의 상품, 원/부재료,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은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 개발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한기간                   | 제한업종   | 제한지역    |
|------------------------|--------|---------|
|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 렌즈 판매점 | 국내 전 지역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렌즈타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계약체결 시 협의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9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
| 점주 자율   | 직접 근무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렌즈타운]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분담절차                                                                                                                 |
|----|----------|-------|------|-----------------------------------------|----------------------------------------------------------------------------------------------------------------------|
| 광고 | 전국<br>광고 | 브랜드광고 | 50%  | 50%<br>(귀하의 매출액/전체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 해당되는 비율) | 광고 및 판촉행사 실시 30일 전 계<br>획안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br>가맹점의 행사 참여<br>(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br>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br>환기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    |                            |      |      |      |
|----|----------------------------|------|------|------|
| 판촉 | 브랜드<br>광고<br>+ 가맹점<br>모집광고 | 50%  | 50%  | 니다.) |
|    | 가맹점모집광고                    | 100% | -    |      |
|    | 개별광고                       | -    | 100% |      |
|    | 전국 및 지역별<br>판촉             | 50%  | 50%  | -    |
|    | 개별판촉                       | -    | 100%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영업비밀의 범위                                                                                | 기간                                                |
|-----------------------------------------------------------------------------------------|---------------------------------------------------|
|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 과 같은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위약벌로서 이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본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갑”이 수익할 수 있었거나 수익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원을 의미하고, 상품 공급에 따른 마진 이익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본 계약 체결 후 실제 가맹점 영업이 개시되기 전까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제15조 1항의 가입비 x 0.04 x 잔여 계약기

간 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 체결 후 영업이 개시된 이후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가맹점 사업자로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최근 3개월 청구금액의 합계  $\times 0.1 \times$  잔여 계약기간 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을”이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최근 3개월 청구금액의 합계  $\times 0.04 \times$  잔여 계약기간 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을”이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최근 3개월 청구금액의 합계  $\times 0.07 \times$  잔여 계약기간 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을”이 제38조(계약의 종료 및 조치)에서 정한 철거 및 반납, 사업 관련 사항의 삭제 및 변경, ‘휴업/폐업 사실증명서’의 제출 의무 등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 1일당 금 오십만 원 (₩ 500,000)을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6. “을”이 제39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최근 3개월 청구금액의 합계  $\times 0.1 \times$  잔여 계약기간 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을”이 제39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최근 3개월 청구금액의 합계  $\times 0.07 \times$  잔여 계약기간 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무와 별개로, 본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본 계약 제47조에 따라 본 계약 체결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 의무를 면제받은 금원, 할인받은 금원(본 계약 제26조 제7항 및 제8항에 의한 금원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등 일체의 이익(물품으로 지원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지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시가액을 의미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금액                                                     |
|-------------|-------------------------------------------------------|------------------------------------|--------------------------------------------------------|
| 합계          | -                                                     | 30~37일<br>(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br>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br>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 접수                                                | 14일<br>(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                                                        |
| 사업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br>-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br>-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                                    |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금 예치 안내                                            | 2일                                 |                                                        |
|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 -투자비 산출<br>-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 2일                                 |                                                        |
| 공사 착수       | 공사 실시                                                 | 15일                                |                                                        |
| 교육실시        | 상품 및 서비스 교육<br>(공사기간 중 실시)                            | 1일                                 |                                                        |
| 영업설비/ 집기 입고 | -가구 등 입고<br>-매장 집기 등 입고                               | 2일                                 |                                                        |
| 초도물품 입고     | -콘택트렌즈 초도물품 입고<br>-기타 초도물품 등 입고                       | 1일                                 |                                                        |
| 그랜드오픈       | -영업시작<br>-판촉 및 홍보이벤트<br>-예치가맹금 수령                     | 당일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 | 방법                  | 비고                                                                       |
|-----|---------------------|--------------------------------------------------------------------------|
| 1   | 전문가 연락<br>(방문/전화 등) |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
| 2   | 전문가의 자문             |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br>자문을 구합니다.                                 |
| 3   | 자문확인서 수령            |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br>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br>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 4   | 가맹본부 제출             |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5   | 가맹계약 체결             |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후부터<br>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br>개선사유                                                                                                                                                                  | 가맹본부<br>부담<br>비용항목                                                                                                                                                         | 가맹본부<br>부담<br>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br>제외사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판교체비용</li> <li>▶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 의한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ul> <p>&lt;분할지급 시 절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 <p>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p>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
| 가맹본부<br>요청 시   | 가맹점 운영과 관련<br>된 경영지도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 | 가맹본부<br>부담 |
| 가맹점사업자<br>요청 시 | 가맹점 운영 전반에<br>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 가맹점<br>부담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렌즈타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상품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상품 교육을 받고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상품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첨1.재무제표(202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별첨2.손익계산서(202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별첨3.재무제표(202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별첨4.손익계산서(202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별첨5.재무제표(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별첨6.손익계산서(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
|----------|-----------------------------------|------|-------------|
| 가맹희망자 성명 | (인)                               | 전화번호 |             |
| 가맹희망자 주소 |                                   |      |             |
| 수령일시     | 년                                 | 월    | 일 (오전,오후) 시 |
| 수령장소     |                                   |      |             |
| 수령 확인    |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      |             |
|          |                                   |      |             |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주)코코엘 (인)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
|----------|-----------------------------------|------|-------------|
| 가맹희망자 성명 | (인)                               | 전화번호 |             |
| 가맹희망자 주소 |                                   |      |             |
| 수령일시     | 년                                 | 월    | 일 (오전,오후) 시 |
| 수령장소     |                                   |      |             |
| 수령 확인    |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      |             |
|          |                                   |      |             |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주)코코엘 (인)

## \_\_\_\_\_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본부 보관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No. | 상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
|----------|-----------------------------------|------|-------------|
| 가맹희망자 성명 | (인)                               | 전화번호 |             |
| 가맹희망자 주소 |                                   |      |             |
| 수령일시     | 년                                 | 월    | 일 (오전,오후) 시 |
| 수령장소     |                                   |      |             |
| 수령 확인    |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      |             |
|          |                                   |      |             |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주)코코엘 (인)

## \_\_\_\_\_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점 보관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No. | 상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
|----------|-----------------------------------|------|-------------|
| 가맹희망자 성명 | (인)                               | 전화번호 |             |
| 가맹희망자 주소 |                                   |      |             |
| 수령일시     | 년                                 | 월    | 일 (오전,오후) 시 |
| 수령장소     |                                   |      |             |
| 수령 확인    |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      |             |
|          |                                   |      |             |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주)코코엘 (인)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상호(가맹점명)  |         |
|             | 성명(대표자)   |         |
|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가맹본부        | 상호(영업표지)  |         |
|             | 성명(대표자)   |         |
|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예치가맹금       | ₩ (금 원 정) |         |
| 신청인의 계좌     |           |         |
| 가맹본부의<br>계좌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